

2020년 상반기 외부강의 등
조 사 결 과 보 고

감 사 실

I. 지적사항 일람표

| 번호 | 처분종류 | 제목 | 처리기한 | 처분대상자 | 감사자 |
|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|-----|
| 1 | 주의 | 외부강의등 신고기한 미준수 | 2개월 | ○장 ○○○ | ○○○ |
| 2 | 주의 | 외부강의등 신고기한 미준수 | 2개월 | ○장 ○○○ | |
| 3 | 주의 | 외부강의등 신고기한 미준수 | 2개월 | ○장 ○○○ | |
| 4 | 주의 | 외부강의등 신고기한 미준수 | 2개월 | ○장 ○○○ | |
| 5 | 주의 | 외부강의등 신고기한 미준수 | 2개월 | ○장 ○○○ | |
| 6 | 주의 | 외부강의등 신고기한 미준수 | 2개월 | ○장 ○○○ | |
| 7 | 주의 | 외부강의등 신고기한 미준수 | 2개월 | ○장 ○○○ | |
| 8 | 주의 | 외부강의등 신고기한 미준수 | 2개월 | ○장 ○○○ | |
| 9 | 주의 | 외부강의등 신고기한 미준수 | 2개월 | ○장 ○○○ | |
| 10 | 주의 | 외부강의등 미신고 | 2개월 | ○장 ○○○ | |
| 11 | 주의 | 외부강의등 미신고 (사례금 미신고) | 2개월 | ○장 ○○○ | |
| 12 | 주의 | 외부강의등 미신고 | 2개월 | ○장 ○○○ | |
| 13 | 주의 | 외부강의등 미신고 | 2개월 | ○장 ○○○ | |
| 14 | 주의 | 외부강의등 미신고 | 2개월 | ○장 ○○○ | |
| 15 | 통보 | 청렴교육 시행 | 2개월 | ○○본부 | |

VI. 처분요구서 (14건)

(01)

주 의 요 구 · 통 보

제 목 외부강의등 신고기준 미준수

소 관 ○○실, ○○본부, ○○본부, ○○본부, ○○○○본부, ○○○본부, ○○본부, ○○본부

조 치 부 서 ○○본부(○○○○처), ○○본부(○○○○처)

내 용

1. 관계법령(판단기준)

공단 임직원은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개정 이전 기준(2020.5.27.)에는 “사례금 수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개시 전까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”하도록 되어 있고, 개정 이후에는 “외부강의등을 마친 후 10일 이내에 신고”하도록 되어 있다.

또한, 「한국철도시설공단 임직원행동강령」 제27조에 따라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또는 그 지위·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세미나·공청회·토론회·발표회·심포지엄·교육과정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강의, 강연, 발표, 토론, 심사, 평가, 자문, 의결, 기고 등(이하 “외부강의 등”이라 한다)의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·회의 등의 요청공문 등을 그 외부강의·회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직근 상급자의 승인을 받고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.

2. 점검결과 확인된 문제

그런데, ○○본부 ○급 ○○○ 등 9명은 [표 1]과 같이 20××년 상반기 동안 ○○○연구원 등 4개 기관으로부터 각각의 외부강의등을 요청받아 참여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최소 3일에서 최대 79일이 경과한 후에 신고한 사실이 있다.

[표 1] 외부강의등 신고기한 미준수 현황

| 일련 번호 | 관련자 | | | 분류 | 요청기관 | 강의일 | 신고일 | 위반내역 (초과일) | 비고 |
|----------|--------|----|-----|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| 소속 | 직급 | 성명 | | | | | | |
| 1 | ○○본부 | ×급 | ○○○ | 자문 | ○○○○연구원 | 2.13 | 2.17 | 1 | 사전신고 위반 |
| 2 | ○○본부 | ×급 | ○○○ | 자문 | ○○○○연구원 | 2.13 | 2.17 | 1 | |
| 3 | ○○○본부 | ×급 | ○○○ | 자문 | ○○○○연구원 | 2.13 | 2.17 | 1 | |
| 4 | ○○본부 | ×급 | ○○○ | 토론 | ○○○○○○○ ○○진흥원 | 1.13 | 5.7 | 77 | |
| 5 | ○○본부 | ×급 | ○○○ | 회의 | ○○○○○○○ ○○포럼 | 5.15 | 5.19 | 1 | |
| 6 | ○○본부 | ×급 | ○○○ | 회의 | ○○○○○○○ ○○포럼 | 5.15 | 5.19 | 1 | |
| 7 | ○○본부 | ×급 | ○○○ | 회의 | ○○○○○○○ ○○포럼 | 5.15 | 5.19 | 1 | |
| 8 | ○○○○본부 | ×급 | ○○○ | 심사 | ○○○○공사 | 5.20 | 6.5 | 3 | 사후신고 위반 |
| 9 | ○○○○본부 | ×급 | ○○○ | 심사 | ○○○○공사 | 6.2 | 6.18 | 3 | |

그리고 ○○본부 ○급 ○○○ 등 5명은 [표 2]와 같이 20××년 상반기 동안 ○○○연구원 등 5개 기관으로부터 각각의 외부강의등을 요청받아 참석한 후 20××.7.22. 현재까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외부강의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, 감사실에서 조사 후 각각 사후 신고한 사실이 있다.

[표 2] 외부강의등 미신고 현황

| 일련 번호 | 관련자 | | | 분류 | 요청기관 | 강의일 | 위반내역 |
|----------|--------|----|-----|----|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소속 | 직급 | 성명 | | | | |
| 1 | ○○본부 | ×급 | ○○○ | 자문 | ○○연구원 | 1.13 | 외부강의등 미신고 |
| 2 | ○○○본부 | ×급 | ○○○ | 평가 | ○○연구원 | 1.29 | 외부강의등 미신고 (사례금 미신고) |
| 3 | ○○○○본부 | ×급 | ○○○ | 평가 | ○○협회 | 4.17 | 외부강의등 미신고 |
| 4 | ○○본부 | ×급 | ○○○ | 심사 | ○○○○공단 | 4.23 | 외부강의등 미신고 |
| 5 | ○○실 | ×급 | ○○○ | 평가 | ○○○공사 | 6.17 | 외부강의등 미신고 |

<조치할 사항>

[주의] ○○본부장은 「한국철도시설공단 임직원행동강령」에 따른 외부강의등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기준을 위반한 ○○본부 ○급 ○○○ 등 14명에 대하여 「인사규정시행세칙」 제92조의2에 따라 “주의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.

[통보] ○○본부장은 「한국철도시설공단 임직원행동강령」에 따른 외부강의등을 하면서 신고기준을 위반한 ○○본부 ○급 ○○○ 등 14명에 대하여 “**징벌교육**” 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.

[관련자]

| | | | |
|--------|---------|----|-----|
| ○○본부 | ○○처 | x급 | ○○○ |
| ○○본부 | ○○○○○○단 | x급 | ○○○ |
| ○○권본부 | ○○○○처 | x급 | ○○○ |
| ○○본부 | ○○○○처 | x급 | ○○○ |
| ○○본부 | ○○처 | x급 | ○○○ |
| ○○본부 | ○○처 | x급 | ○○○ |
| ○○본부 | ○○처 | x급 | ○○○ |
| ○○○○본부 | ○○○○1처 | x급 | ○○○ |
| ○○○○본부 | ○○○○1처 | x급 | ○○○ |
| ○○본부 | ○○○○처 | x급 | ○○○ |
| ○○○본부 | ○○○○○단 | x급 | ○○○ |
| ○○○○본부 | ○○○○1처 | x급 | ○○○ |
| ○○본부 | ○○○○○○처 | x급 | ○○○ |
| ○○실 | | x급 | ○○○ |